

자 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제도 시행규정

- 노동부고시 제92-48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제도 시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2년 12월 29일

노동부장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 내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설비 및 공사의 범위와 계획서의 작성·심사기준 및 확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48조 제1항에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등을 설치·이전”이라 함은 일관의 제조설비 일체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제품 생산량의 증가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설비등의 규모를 증가시키거나 추가로 설치할 경우로서, 변경되는 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30킬로와트

이상일 경우.

- 나. 설비교체 또는 공정개조등을 위하여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일 경우.
 - 다. 유해·위험물질 처리를 위한 세정설비, 소각설비, 제진설비를 포함한 일관설비를 신설또는 증가할 경우.
3. 법 제48조제1항에서 “공사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의 대상설비등을 설치하는 공사시작을 말한다.
 4. 법 제48조제2항에서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이라 함은 규칙 제1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5. 법 제48조제3항에서 “공사착공”이라 함은 심사대상 구조물의 공사 시작을 의미하며, 대지정지, 가설사무소 건설등 공사준비 기간은 공사의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2 장 계획서제출 대상설비 및 공사의 범위

등

제 3 조 (대상업종) 규칙 제1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서 제출 대상업종의 상세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 4 조 (화학설비) 규칙 제120조제2항제2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안전규칙 별표 3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안전규칙 별표3의 위험물질을 별표 2의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가스를 연료로써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저장설비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량의 10배로 한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화학설비 그 부속설비가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질이 2종이상이고 개개의 양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양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면 그 값이 1이상인 때에도 또한 같다.
도표분수

$$R = \frac{C_1}{T_1} \frac{C_2}{T_2} + \dots + \frac{C_n}{T_n}$$

주) R : 산출값

C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 : 위험물질 각각의 기준량

제 5 조 (건조설비) 규칙 제120조제2항제3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1의 것을 말한다.

1. 안전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이 함유된 건조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내용적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
2. 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건조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 시간당 20킬로그램 이상 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2세제곱미터 이상 다. 정격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

제 6 조 (공 사) 규칙 제120조제3항제7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최대인양하중 30톤이상의 고정식 크레인(이동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 3장 계획서의 제출 등

제 7 조 (첨부서류) ①규칙 제121조제1항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도면 및 서류는 별표 3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에 한한다.

②규칙 제121조제2항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도면 및 서류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공통사항과 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종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 (작성기준) ①규칙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의 첨부도서 및 서류의 작성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4의 우란과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작성기준에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는 범위내에서 2종이상의 도면 및 서류를 1종의 도면 및 서류로 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 9 조 (제출부수) 규칙 제1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제출면제) 규칙 제12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동규칙 동조제2항에 규정한 기계 등을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 4 장 계획서의 검토 등

제 11 조 (심사요청)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규칙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계획서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심사위원 등) ①공단은 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분야
2. 법 제48조제3항 관련분야
3. 기타 계획서의 심사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안전보건분야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규칙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를 심사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분야중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3인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심사위원을 제2항의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 조 (서류의 보완 등) ①공단은 심사과정중 서류의 보완 기타 추가 도면 및 서류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요청한 내용과 심사결과 통지의 지연에 관한 사항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통지의 지연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은 규칙 제122조제2항의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 (심사결과와 구분) 심사결과와 구분을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심사결과와 통지 등) ①공단은 규칙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계획서 심사결과통지서 1부와 필요한 도면 및 서류에 별표 5의 심사필인을 표시한 첨부서류 2부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규칙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와 공사의 착공 중지 또는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개선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

하게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보고) 공단은 이 고시에 의한 계획서의 심사결과와 확인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별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심사기준) 계획서의 심사기준은 법, 영, 규칙, 안전규칙, 보건규칙 기타 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정등에 의한다.

제 5 장 심사결과 조치

제 18 조 (심사결과 구분) ①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당해 사업장에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을 때
2. 공사착공중지 : 기계·설비의 설치장소, 건설물의 안전설비가 부적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위반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를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3. 공사계획변경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위반하여 그 개선대책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때

②지방노동관서장은 심사결과 유해·위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할 수 있다.

제 19 조 (서식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 및 첨부서류 각 1부와 그 결과를 제18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적정통지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공사착공중지 및 공사계획 변경 통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를 통지한 때에는 그 이유와 개선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재심사 신청) ①사업주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중지 또는 공사계획 변경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인을 제거한 후 관련도면 및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재심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서류보존) 사업주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심사와 관련된 서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20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5년간
2. 규칙 제120조제3항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 준공후 2년간

제 6 장 확 인

제 22 조 (확인시기) 법 제48조제5항 및 규칙 제 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계획서 심사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체적인 확인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은 시운전단계일때
2.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은 건설공사중 위험한 공정일때

제 23 조 (확인신청) ①사업주는 법 제48조제 5항 및 규칙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확인요청일 30일전에 별지 제4 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확인의 시기에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4 조 (일정의 통보) ①공단은 제23조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확인일정을 사업주와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확인일정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확인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 25 조 (확인) ①공단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124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내용과 실제공사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확인을 실시한 결과 개선명령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 그 이유와 개선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명령 기타 행정조 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명령서를 제1항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수수료

제 26 조 (수수료 등) ①계획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수수료를 공단에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납부하고 그 증빙서류를 계획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 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심사제도시행규정(고시 제91- 15호)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는 이 고시에 의 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전에 제출된 계획서의 심사기준 등은 이 고시에 의한 심사기준등에 의한다.

제 3 조 (폐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제도 시행규정(고시 제91-15호)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㉞